

제 253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손왈수

전화 75 - 7834

1972. 7. 10.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 시보

차 례

이 영우보  
1972. 7. 10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 칙

제 1231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 3

제 1232 호 서울특별시직제중개정규칙 ..... 4

◎ 훈 령

제 358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 6

◎ 공 고

제 161 호 72년도 제 2차중소기업육성채성자금집행요령 ..... 6

◎ 사 령 ..... 8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규 칙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7월 8일

## ◎ 서울특별시규칙제 1231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제 2 호중 "소년제"를 삭제하고 "교통제"를 신설하며 제 3 호 및 제 6 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 4 호를 제 3 호로, 제 5 호를 제 4 호로, 제 7 호를 제 5 호로, 제 4 호중 "조사제"를 삭제하고 "형사제"를 신설한다.

3 조중 제장은 "경위 또는 경사"를 "경감 또는 경위"로 한다.

별표 1 경찰서 과, 계, 분장사무포중 다음과 같이 한다.

파별란 "경무" 제별란 "경리" 분장사무란중 "20" 다음에 "21, 22, 23"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며 "21"를 "24"로 한다.

21. 경찰차량에 관한 사항

22. 운전원 교양 감독에 관한 사항

23. 경찰차량 배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파별란 "보안" 제별란 "보안" 분장사무란의 "11, 14, 15, 18, 20, 21"을 각각 삭제하고 "12"를 "11"로,

"13"을 "12"로, "16"을 "13"으로 "17"을 "14"로, "14"다음에 "15. 즉심사범피의자의 유치호송 및 지문 채취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22"를 "16"으로 "19"를 "17"로, "23"을 "18"로 하며 파별란 "보안" 제별란 "소년"을 삭제하고 제별란 "소년"의 분장사무란의 "1 내지 7"을 파별란 "보안" 제별란 "보안"의 분장사무란중 "18" 다음에 "19 내지 25"로 신설하며, 파별란 "보안" 제별란 "외근" 분장사무란중 "9"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0. 호구조사업무

11. 방범업무 계획 및 지도

12.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예방 (풍수 설해는 제외) 과 조치

1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위법축대에 관한 사항

14. 수상경찰에 관한 업무

파별란의 "교통"을 삭제하고, 파별란 "보안" 제별란 "외근" 다음에 "교통"을 신설하며, 파별란 "교통" 제별란 "교통" 분장사무란의 "1 내지 9"를 파별 "보안" 제별 "교통" 분장사무란 "1 내지 9"로 하며, 파별란 "경비" 제별란 "작전경비" 분장사무란중 "11, 13, 14, 16"을 각각 삭제하고 "12"를 "11"로, "15"를 "12"로, "17"를 "13"으로 "18"을 "14"로, "19"를 "15"로, "20"을 "16"으로

“21”을 “17”로 하며, 과별란 “경비” 제별란 “방위” 분장사무란중 “15” 다음에 “16,17”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16. 풍수설해의 경찰대책에 관한 사항  
 17. 화재에 대한 경찰대책에 관한사항  
 과별란 “수사” 제별란 “수사” 분장사무란중 “10,11,12,13”을 각각 삭제하고 과별란 “수사” 제별란 “조사”를 삭제하며, 제별란 “조사”의 분장사무란 “1 내지 4”를 과별란 “수사” 제별란 “수사” 분장사무란 “9”다음에 “10 내지 13”으로 “13” 다음에 “14. 수법공조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14”를 “15”로 하며, 과별란 “형사” 제별란 “형사1” “형사2” “형사3” “형사4” 분장사무란 형사1의 “1내지 7”, 형사2의 “1 내지 3”, 형사3의 “1 내지 3”, 형사4의 “1 내지 6”을 각각 삭제하고 과별 “수사” 제별 “수사” 다음에 “형사”를 신설하며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범죄 수사 및 검거에 관한사항
2. 특명사건(사항) 특별수법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3. 횡령, 배임, 독직사건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사항
5. 통화 공채 위조사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6. 강력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7. 폭력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8. 도범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9.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조직도범에 관한사항은 330 수사대에서 수사및 검거
10. 치기배사범 장물사범 수사 및 검거에 관한 사항
11. 마약사범수사 및 검거에 관한사항
12. 금융경제사범 동향파악 및 수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3. 회사 비법화사범(특의품포함) 및 은행사범 수사 자료수집에 관한사항  
 과별 “정보” 제별 “정보3” 분장사무란중 “7”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8. 남북적십자회담에 따른 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지적재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7월 8일

◎ 서울특별시규칙제 1232호

서울특별시지적재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적재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5조 내지 제 78조 각항중 “담당”을 “계장”으로 각호중 “담당”을 “계”로 각각 한다.  
 제 64조제 1항중 “소방과”를 삭제하고

제 2 항중 "소방 과장은 소방총경으로" 를 삭제한다.

제 65 조제 1 항중 "경정"을 "경정 또는 경감"으로 한다.

제 66 조제 2 항제 1 호 보안계의 사무중 "나, 라, 사, 자, 차"를 각각 삭제하고 "다"를 "나"로 "마"를 "다"로 "바"를 "라"로 "아"를 "마"로 "카"를 "바"로 "타"를 "차"로 하고 "사, 아, 자"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사. 사행행위 율락행위 광고물 지도단속 및 사회풍기정화

아. 총포, 화약류 허가 및 단속지도

자. 즉결 심판에 관한 사항

제 2 항 제 2 호 외근계사무중 "라"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마. 호수조사업무

바. 방범계획 및 지도

사. 각종 안전사고 및 위해예방(풍수설해는 제외)과 조치

아. 무허가 건축물 단속

자. 수난구조

차. 유선업

카. 방범순찰대운영

제 2 항 제 3 호 소년계사무중 "사"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아. 여자경찰관 지도

자. 풍속업소 및 유해환경 단속지도

제 67 조제 1 항중 "고속도로순찰대" 및

제 2 항제 5 호 "고속도로순찰대"를 각

각 삭제한다.

제 68 조제 2 항제 2 호중 "아" 이하를 삭제한다.

제 69 조제 1 항중 "동원계"를 "민방공계"로 제 2 항제 1 호 방위계 사무중 "나, 마, 바, 사, 아"를 삭제하고 "다"를 "나"로 "라"를 "다"로 하고 "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라. 예비군 동원운영및 복무규율

마. 예비군 무기탄약 및 장비관리유지

바. 예비군 원호 및 보급지원

사. 방위소집자 운영관리

아. 과내 직원 복무 및 인사

제 2 항제 2 호중 "동원계"를 "민방공계"로 하며 민방공계 사무중 "가, 나, 다, 라, 바"를 각각 삭제하고 "가, 나, 다, 라, 바"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가. 민방공 계획 및 조정

나. 민방공 교육훈련

다. 민방공 시설관리 유지

라. 풍수설해의 경찰대책

바. 화재에 대한 경찰대책

제 70 조제 2 항 "차" 다음에 "카. 민방공경보기관리유지"을 신설한다.

제 71 조를 삭제한다.

제 72 조제 2 항제 1 호 수사계사무중 "바" 다음에 "사. 특명사항수사 및 조사에 관한사항"을 신설하고 "사"를 "아"로 한다.

제 74 조제 2 항제 3 호 "사" 다음에 "아. 남북적십자회담자료조사"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제 358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2년 7월 8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

전결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제4조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별표란의 "담당"을 "계장"으로 주관별란 "소방과" "소관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61 호

72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집행요령

72년도 제2차 중소기업육성 재정 자금 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2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 시 책 별 : 수출특화산업육성자금지원

2. 재 원 : 72년도 배정액 45,900 천원

3. 지원 내용

가. 자금구분 시설자금

나. 지원한도 10,000 천원 이내

다. 융자기간 1년 거치, 4년상환

라. 금 리 년 12%

4. 지원대상

상공부 고시 제 8263 호 (72.1.21)

로 상공부 장관이 지정한 별표 업종 및 품목 생산업체로서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필하고

나. 71년도 수출실적이 있고

다. 72년도에도 계속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할 수 있음을 증빙서류상으로 입증하는 업체

5. 신청절차

가. 신청서류 : 소정서식의 신청서 (시청공업과 배부) 및 관계증빙서류 1부

나. 신청할곳 : 공장소재지구청 (산업과, 영등포구는 상공과)

구청장이 시장 (공업과)에게 전달

다. 신청기간 : 72.7.10 - 7.22 (13일간)

<p>6. 지원대상결정 서울특별시 재정자금융자대상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p>	<p>상을 결정하여 상공부장관 및 중소 기업은행장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출.</p>
---	---

“별 표” 수출특화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업종및품목

업 종	품 목	비 고
<p>생 사 인삼 및 인삼가공품 전 직 물 저 마 제 품 벽 지 류 도자기및타일 공 예 품 (신변세화포함)</p>	<p>생 사 인삼주 전 직 물 남방샤쓰, 카덴카바류, 와이샤쓰, 쉐타, 저마제품 에 한함. 와이류 저마지 벽 지 가정용 도자기 제품(꽃병, 대접, 접시등) 면조화, 지조화, 진주, 인조진주, 진주모패, 갑 각귀석및 귀금속제품, 유리가공제품, 석가공제품, 신변용인조세화류, 프라스틱 및 인조진주제, 각 종부로치류, 의장식제품, 완륜, 시제, 밴드, 맷지 류 및 메달류, 박클류, 스텝키류, 빗및 머리장식 식구류 축제품, 목 제품, 프라스틱류제품, 완쵸제 품, 단추류, 핸드백류, 진유공예제품, 나전칠기, 고물모피제품, 흡연 용구류</p>	<p>저마제품에한함</p>

사 령

◎ 1972. 6. 29.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관 박재주

소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식품화학과의장 지방보건연구관 박성배

위생연구소 약품화학과의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세균혈청과의장 지방보건연구관 신정태

위생연구소 식품화학과의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공해검사과의장 지방보건연구관 김효상

위생연구소 첨가불과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약품검정과장의장 지방보건연구관 오영근

위생연구소 수질공해과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위생화학과의장 지방보건연구관 김학영

위생연구소 세균과장에 포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김종석

위생연구소 대기공해과장에 포함

직무대리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이덕행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원재은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송한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 윤원용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남병찬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장재홍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노홍식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이정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김을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임봉택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사보 신재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박춘봉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임순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김석치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박두희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이봉자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우준제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	이 강 문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이 현 주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노 종 식	© 1972. 7. 7.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건설국 영선과장) 건축기정유병화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신 경 철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김 철 중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좌	허 각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박 귀 영	성동구	지방건축기좌	유 명 하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이 인 세	성북구	지방건축기좌	유 태 힌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오 수 경	마포구	지방건축기좌	한 기 실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지방보건연구원보	김 민 영	영등포구	지방건축기좌	이 주 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건축과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서 정 효	수도국시설과	지방토목기좌	김 태 백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공원용수계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오 일 환	수도국급수과	지방토목기좌	박 제 문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급수장치계장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용 재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김 규 현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동 희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주사보	문 정 배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위생시험소	고 용 원	김 수 선	종로구보건소	지방행정서기	곽 복 일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종로구보건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서기보 윤 갑 영	중 구 지방행정사무관 김 항 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성동구보건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주사 이 규 한	종로구보건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수의사 김 세 동
성 북 구 수도사업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서기관(소장) 조 정 열	경북대구시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전입을 명함	이 제 응
성 북 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사무관 전 원 호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 북 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행정사무관 박 준 환	중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